

제405회 정례회

'22. 11. 23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」 제8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“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반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(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상가 내)
※ 도 ⇔ 주식회사 대원디앤디, 임대차 계약 체결(3억원 / '25. 6. 30.까지)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4. 12. 31. (2년)
- 수탁자격 : 충청북도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 대학
※ 지원단장: 예방의학,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사 업 비 : 607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 * '23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(안)

○ 위탁사무

-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
- 역학조사 지원, 공중보건위기(신종감염병, 생물테러 등) 대응 훈련 지원
-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,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□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

제8조(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(이하 “감염병관리지원단”이라 한다.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, 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
2.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, 보급 및 홍보
3.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4.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정보 제공
5.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
6.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
7. 도 내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
8. 공중보건위기(신종감염병, 생물테러 등) 대응 훈련 관한 사항
9. 도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·훈련
10.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제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¹⁾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, 제4조의2²⁾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, 조사,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과 역학조사 지원, 공중보건 위기 대응 훈련 지원, 감염병 대응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-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바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

1)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2)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호에 따른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’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」 제8조제3항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‘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’,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’에 해당하는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,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으로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·점검해야 할 것임.